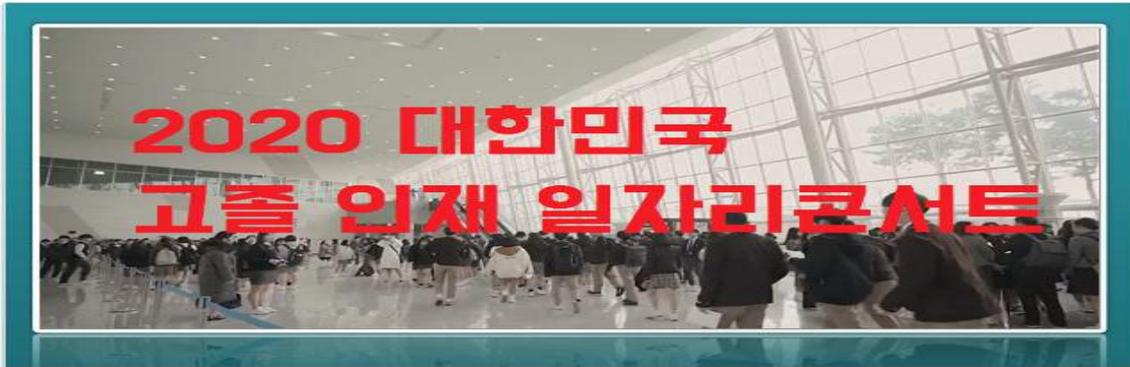


## 채용행사 정보 등 홍보사항

**\*\*참여전, 일정 등의 변경 사항을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.**

### □ 2020 대한민국 고졸 인재 일자리콘서트 (6.3~6.4)



- ▶ **슬로건:** 꿈을 위한 도전
- ▶ **목 적:** 구직자와 구인기업 간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여 고졸취업을 활성화하고, 청년실업해소 및 능력중심사회 정착에 기여
- ▶ **장 소:** 일산 KINTEX 제2전시장 6홀 ([www.kintex.com](http://www.kintex.com))
- ▶ **참가 대상:** 고등학교 졸업생, 재학생, 취업담당 교사, 학부모 일반 신입, 경력 구직자(관련기업 참가 시)등
- ▶ **규 모:** 약 100개사 170부스(5,673㎡), 3만명 관람 예상
- ▶ **참가기관(학교):** 총 100개사 170개 부스 (\* 현장채용 65개사)
  - 대기업관: 약 15부스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금융기업: 약 15부스
  - 공공기관: 약 20부스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중견(소)기업: 약 45부스
  - 대 학: 재직자 특별전형 대학, 사이버 대학 등: 약 25부스
  - 산학관: 정부부처 연계형 특성화고·중등직업교육 선도학교 등: 30부스
  - 기타 부대행사 등: 약 20부스
- ▶ **구 성:** (전시) 채용·상담관, 취업정보 특별관 등  
(부대행사) 채용특강·설명회, 진로특강, 진로컨설팅 등

일시	3월25~26일 => 2020년6월3일(수)~04일(목) 변경되었습니다.		
장소	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6홀		
참가대상	고등학교 졸업생, 재학생, 일반신입, 경력구직자(관련기업참가시)등		
행사구성	채용·상담관, 취업정보 특별관 등 △부대행사		
주최	교육부·고용노동부·중소벤처기업부·한국경제신문		
주관	교육부·고용노동부·중소벤처기업부·한국경제신문		
기업신청기간	,	개인신청기간	행사당일 참석
문의처	02-360-4509	FAX	--
담당자		E-MAIL	@
사이트(출처)	<a href="http://www.gojobcon.kr/main/main.php">http://www.gojobcon.kr/main/main.php</a>		

□ 2020 전역예정장병 취업박람회 (6.17~6.18)



일시	2020 6월 17~18일로 연기되었습니다.		
장소	킨텍스 제1전시장 5홀		
참가대상	취업을 희망하는 군 전역예정장병		
행사구성	채용면접 및 상담, 1:1 맞춤 취업컨설팅, AI 현장매칭,		
주최	대한민국 국방부		
주관	국방전직교육원		
기업신청기간	취업박람회 사무국문의	개인신청기간	홈페이지 사전접수 및 행사당일 참석
문의처	02-2006-6131	FAX	--
담당자		E-MAIL	moti@career.co.kr
사이트(출처)	<a href="http://moti.career.co.kr/default.asp">http://moti.career.co.kr/default.asp</a>		

##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운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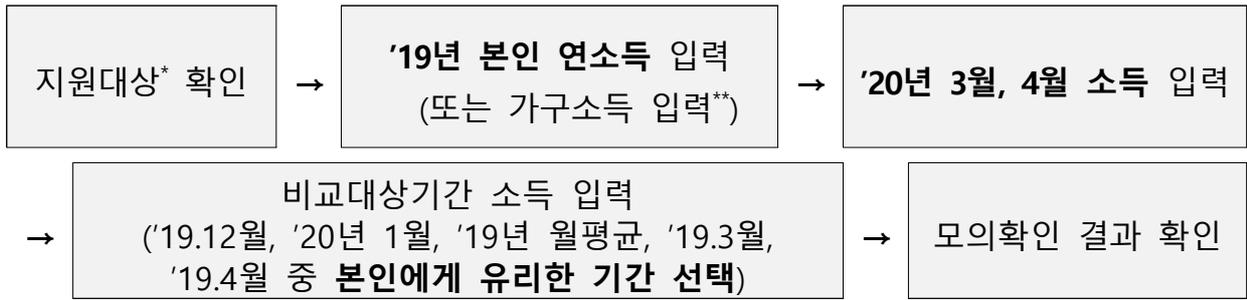
-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주소: [covid19.ei.go.kr](https://covid19.ei.go.kr)
- 5.25.(월)부터 지원여부 확인 가능한 '모의확인 서비스' 제공

- 고용노동부(장관 이재갑)는 5월 25일(월)부터 「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」([covid19.ei.go.kr](https://covid19.ei.go.kr))를 운영한다.
  -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또는 매출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(이하 특고)·프리랜서, 영세 자영업자,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,
  - 대상자는 소득·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(50만원×3개월)을 2회에 걸쳐 지원받을 수 있다.
    - \* ▲1회차: 100만원(신청 후 2주 이내), ▲2회차: 50만원(7월 중, 추가 예산 확보 후)
- 「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」([covid19.ei.go.kr](https://covid19.ei.go.kr))에서는 지원대상, 자격요건, 증빙자료 및 발급방법 등 자세한 설명을 볼 수 있고,
  - 오늘(5.25.)부터 '모의확인 서비스'를 통해 본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.
- 한편,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6월 1일(월)부터 7월 20일(월)까지 전용 홈페이지([covid19.ei.go.kr](https://covid19.ei.go.kr))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,
  -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담 콜센터(☎1899-4162)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.

## 모의확인 서비스\*

\* 홈페이지(covid19.ei.go.kr)접속 → 특수형태근로종사자(특고) / 프리랜서 / 영세 자영업자 / 무급 휴직자 GO → 모의확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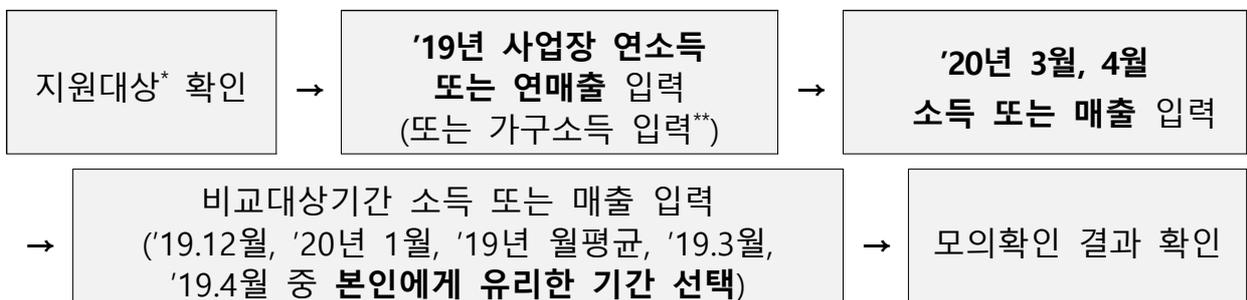
### 1) 특수형태근로종사자·프리랜서



\* '19.12~'20.1월동안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이면서 노무를 제공(2개월 합산 10일 이상) 하거나 소득이 발생(2개월 합산 50만원 이상)한 경우

\*\* 주민등록등본 상 기재된 본인, 배우자, 직계존비속의 '20.3~5월 건강보험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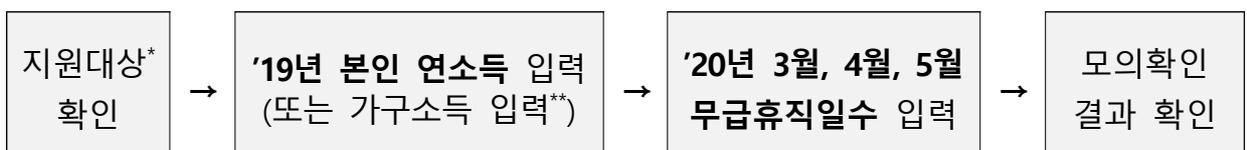
### 2) 영세 자영업자



\* '19.12~'20.1월에 자영업을 영위한 1인 자영업자이거나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경우(단, 유흥·향락·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)

\*\* 주민등록등본 상 기재된 본인, 배우자, 직계존비속의 '20.3~5월 건강보험료

### 3) 무급휴직자



\* '20.3~'20.5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이며 소속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 기업인 경우

↳ 항공기취급업(항공지상조업), 인력공급업(호텔업, 항공기취급업)은 기업규모기준 미적용

\*\* 주민등록등본 상 기재된 본인, 배우자, 직계존비속의 '20.3~5월 건강보험료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지원단 임세희 서기관 (☎044-202-7314) 또는 박경구 사무관(☎044-202-7381) 또는 전담 콜센터(☎1899-4162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
특고·프리랜서, 영세 자영업자,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 
**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안내**

지원  
내용

**150만원** ('20.3~5월의 소득 감소에 대해 월 50만원 x 3개월)

지원  
대상

-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·프리랜서** '19.12~'20.1월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
- 2 영세 자영업자** '19.12~'20.1월에 자영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(유희·향락·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)
- 3 무급 휴직자** 50인 미만 기업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중 '20.3~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\*  
\* 단, 「항공사업법」상 「항공기취급업」(항공지상조업) 및 인력공급업체 소속 근로자 중 항공기취급업 또는 호텔업 종사자의 경우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

지원  
요건

신청인 연소득 5~7천만원 이하(연매출 2억원 이하)  
 또는 가구소득 중위 150% 이하인 사람 중 소득·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

1구간	2구간
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<b>100% 이하</b> 또는 신청인 연소득 <b>5천만원 이하</b> (연매출 1.5억원 이하)	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<b>100% 초과~150% 이하</b> 또는 신청인 연소득 <b>5천만원 초과~7천만원 이하</b> (연매출 1.5억원 초과~2억원 이하)
<b>소득·매출</b> 25% 이상 감소	<b>소득·매출</b> 50% 이상 감소
<b>무급휴직일수</b> 총 30일 이상 (또는 월별 5일)	<b>무급휴직일수</b> 총 45일 이상 (또는 월별 10일)

※ 1) 소득·매출 감소는 비교 대상 기간('19년 월 평균소득, '19.12~'20.1월 중 특정 월, '19.3~4월 중 특정 월 가운데 유리한 기준 적용) 대비 '20.3~4월 평균 소득·매출의 감소 여부로,  
 2) 무급휴직일수는 '20.3~'20.5월 간의 무급휴직일수로 판단

신청  
기간  
/  
방법

**신청기간** 6월 1일 ~ 7월 20일 \* 신청일 이후 2주 내 100만원, 7월 중(추가 예산 확보 후) 50만원 지급

**신청방법**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(PC, 모바일)

<https://covid19.ei.go.kr>



관련 문의 : 1899-4162 (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전담 콜센터)

## 일자리포털 워크넷, 직무역량 중심 인공지능 일자리연결서비스 시범 운영

- 국가직무능력표준(NCS)·채용공고 등에서 270만 개 핵심어를 분석한 '직무지식지도'로 직무 연결 강화

- 고용노동부(장관 이재갑)와 한국고용정보원(원장 나영돈)은 일자리포털 워크넷의 직무역량 중심 인공지능 일자리연결 서비스 '더워크 에이아이'(The Work AI)를 시범 운영한다.
  - 고용노동부 등은 작년 1월부터 사용자가 이력서만 등록하면 고용 보험 수혜이력, 훈련정보 등을 분석하여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추천해주는 빅데이터 기반 일자리 추천서비스를 제공해 왔다.
  - 이번에 시범 운영하는 인공지능 일자리연결 서비스(더워크 에이아이)는 기존 연산방식(알고리즘)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서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에게 더 적합한 일자리를 추천하고, 기업에서는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더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.
- 인공지능 일자리연결 서비스(더워크 에이아이)는 일자리포털 워크넷에 등록된 구직자의 이력서와 구인기업의 채용공고에 적혀 있는 ▲**직무핵심어** ▲**구직자 속성** ▲**채용공고 요구사항** ▲**온라인 행동유형**을 분석해서 직무와 구인조건에 적합한 인재와 일자리를 연결한다.
- 이번 시범 운영은 일자리포털 워크넷에서 직무역량 중심 인공지능 일자리연결서비스를 본격 적용하기 전에 서비스 이용에 대한 사용자 반응을 확인하고 연결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.
  -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사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이용 편의성과 품질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, 서비스 이용에 대한 반응도 살펴볼 예정이다.
  - 이를 토대로 사용자 환경(User Interface)과 사용자 경험(Use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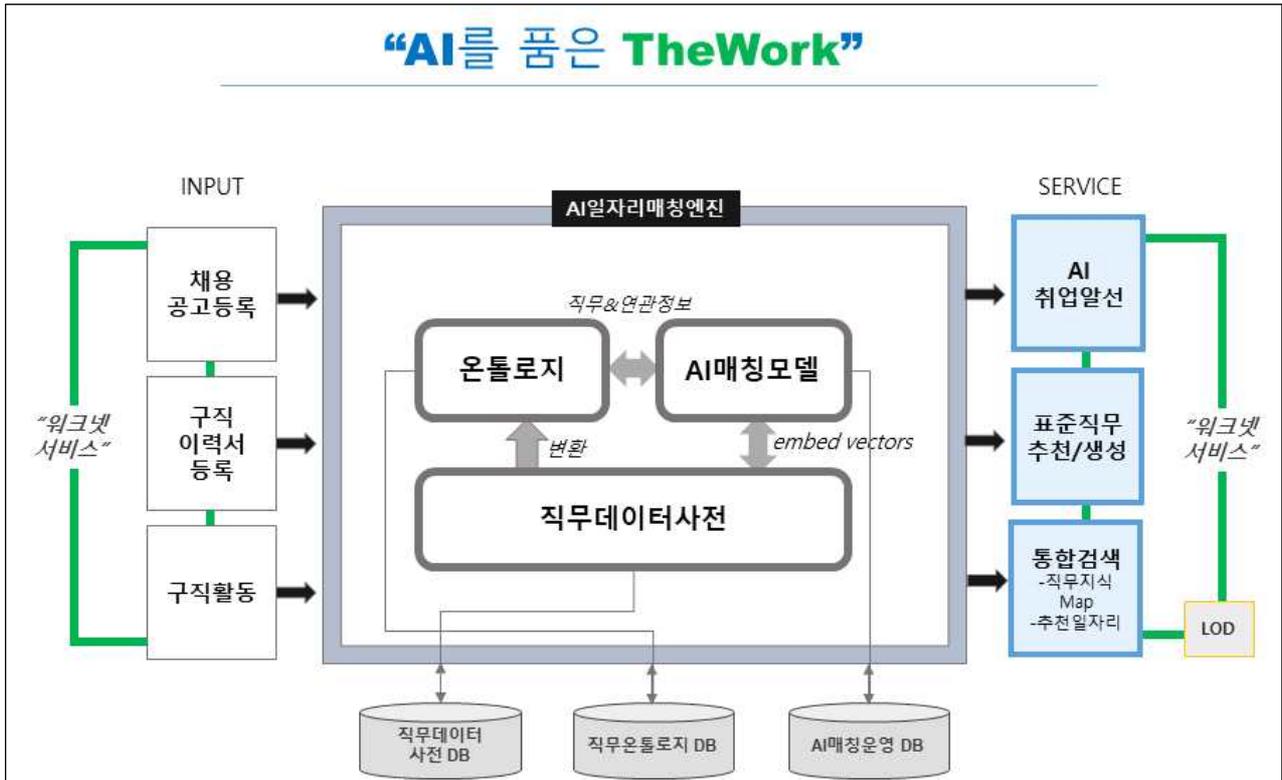
experience)을 개선하여 정식 운영을 할때 더욱 발전된 연결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.

- 황보국 고용지원정책관은 “인공지능 일자리연결 서비스(더워크 에이아이)는 첨단 인공지능 기술 기반 고용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한 밑바탕이 될 것이다.”라며,
- “더 나은 서비스로 나아가기 위해 시범운영 기간 동안 사용자의 반응을 면밀하게 살펴 보겠다.”라고 밝혔다.

 공공누리	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조경옥 사무관(☎044-202-7674)과 한국고용정보원 플랫폼 개발팀 조인성 과장(☎043-870-858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---	---	---

# 참고자료

## <더워크 에이아이(The Work AI) 개념도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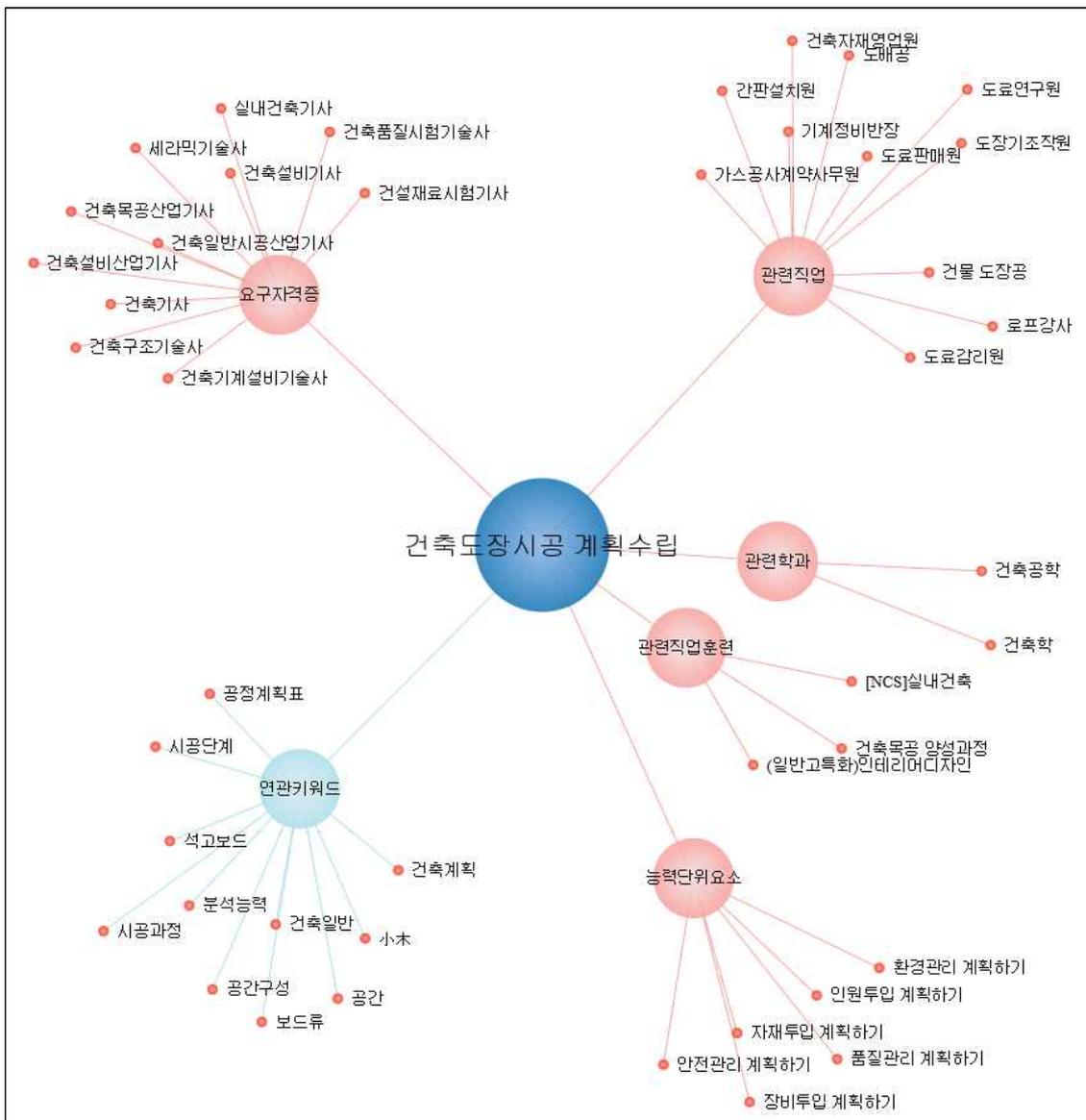


## <직무데이터사전 참고 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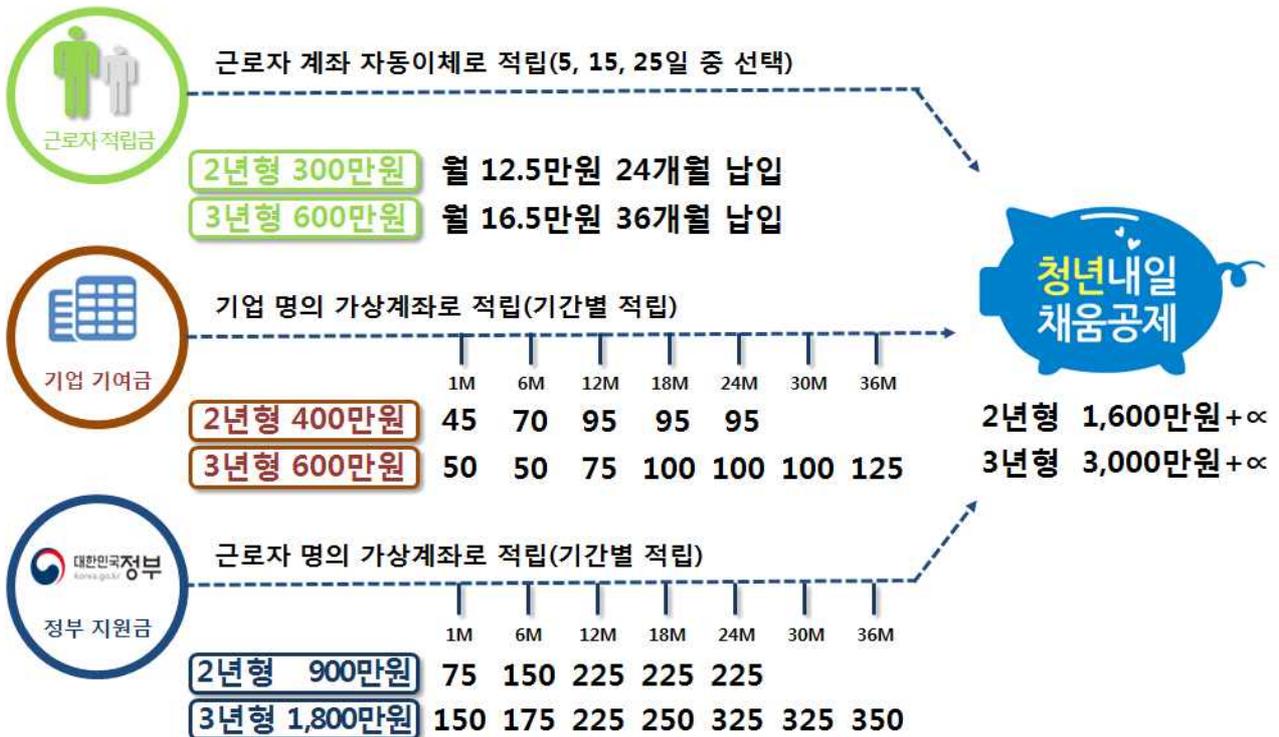
- 직무데이터사전은 ▲국가직무능력표준(NCS) 직무 정의 및 학습자료 ▲일자리포털 워크넷 모집 공고 ▲직업사전, 훈련 및 자격 등 관련 자료 18종에서 270만개 핵심어를 추출하고 직무와 핵심어 사이의 연관성 분석과 관계 정의

### <직무지식맵 시각화 예시>



## 2020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안내

- **[개 요]** 미취업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자산형성 방식 지원모델인 「청년내일채움공제」 신설(16.7월)
  - 신규취업 청년의 일정기간 근속 및 납입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보태어, 만기 시 일시금을 수령하는 일종의 '3자 공동적금'
- **[지원대상]** 중소·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'청년' 및 '채용기업'
  - (청년) 만 15~34세 중소·중견기업 정규직 신규 취업자
    - \* 생애최초 취업자 원칙이며, 예외적으로 '최종학교 졸업 후 고보 가입 총 12개월 이하' 가입 가능(3개월 이하 단기가입 기간은 기간산정 시 제외)
  - (기업)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·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(벤처기업,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5인 미만 가능)
- **[지원방식]** 가입기간 동안 청년·정부·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



\* 기업은 2년 450만원 또는 3년 670만원의 지원금 중 400만원 또는 600만원을 청년에게 기여

□ **[중도해지]** 본인 납입분 전액 및 지원금 일부를 해지금으로 지급

- (본인 납입분) 해지 시까지의 납입액 전액 **환급**(해지사유 무관, 2, 3년형 동일)
- (기업 기여금) 해지 시까지 적립된 기업기여금 전액 **정부 환수**( “ )
- (정부 지원금) 해지 시까지 적립된 지원금의 일부를 청년에게 지급  
(2년형은 50%, 3년형은 30% 수준)

**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위탁운영기관 현황 [총 4개소]**

운영기관명(대표전화)	운영기관명(대표전화)
(주)커리어넷 서울북부지사(02-2006-9583)	서울시북부여성발전센터(02-3399-7651)
인크루트알바콜(주)서울북부지사(02-2186-9059)	(사)한국직업지도진흥원 노원지부(02-6959-5570)

# 2020 기업지원제도 안내

## 1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종류

● 서울북부고용센터 서식자료실 → “사업주가 알아야 할 기업지원 등 주요 내용” 검색

1	고용창출장려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(심사형, 요건형)</li> <li>② 청년추가고용장려금</li> <li>③ 국내복귀 기업 지원(심사형)</li> <li>④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(심사형)</li> <li>⑤ 고용촉진장려금지원</li> </ul>
2	고용안정장려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정규직 전환지원(심사형),</li> <li>② 워라벨일자리장려금</li> <li>③ 일·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(심사형),</li> <li>④ 출산·육아기고용안정 장려금 지원</li> </ul>
3	고용유지지원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고용유지지원금,</li> <li>② 무급 휴업·휴직고용유지지원금</li> </ul>
4	장년고령자고용장려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,</li> <li>②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</li> </ul>

## 2 중복지원 사업 대상

양 장려금	중복 시	지원 비율
일자리 함께하기 (100% 지급)	고용창출장려금	+ 70% 추가지원
	고용안정장려금	+ 100% 추가지원

## 3 문의처

○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기업지원팀 (☎ 02-2171-1800~5)

## ○ 기업지원 사업별 주요 내용

고용장려금 지원사업		지원내용
고 창 장려 금	일자리 함께하기 지원	(공모형) 교대제 개편, 실 근로시간 단축, 일자리 순환제 등을 도입하여 기존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줄임으로써 실업자를 신규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[증가한 근로자 1인당] -인건비: 우선지원대상기업 월80만원, 중견기업 및 대규모기업 월 40만원, 1~2년 지원 -임금감소액보전: 월 최대 40만원 지원(사업주 보전임금의 80%한도)
		·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사업주 [증가한 근로자 1인당] -인건비: 증가 노동자 수 1인당 월 40~100만원, 1~2년 지원 -임금감소액보전: 월 최대40만원, 1~2년 지원(사업주 보전임금의 80%한도)
	청년추가 고용장려금	· 청년(만15~34세 이하)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이상 중소, 중견기업(성장유망업종, 벤처기업 등은 5인미만도 가능) 사업주 [청년 추가채용 1인당] 연 최대 900만원, 3년지원
	국내 복귀 기업 지원	·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국내복귀기업으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사업주 [증가한 근로자 1인당]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, 중견기업 월 30만원
	신중년적합 직무고용지원	· 만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규 고용한 사업주 [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]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, 중견기업 월 40만원
	고용촉진 장려금 지원	·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프로그램이수자, 중증장애인, 여성가장, 도서지역 거주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 [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]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, 대규모기업 월 30만원
고 안 장려 금	정규직 전환지원	·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비정규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[전환된 근로자 1인당] 임금증가 보전금: 월 최대 60만원, 간접노무비 월 30만원
	위라벨일자리 장려금	· 전일제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이 필요할 때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도록 한 사업주 [전환된 근로자 1인당] 임금감소 보전금: 월 최대 40만원, 대체인력인건비: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60만원, 대규모기업 월 30만원, 간접노무비: 우선지원대상기업·중견기업 월 20만원
	일.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	· 시차출퇴근제, 선택근무제, 재택근무제, 원격근무제를 도입·확대하여 소속 근로자가 활용토록 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[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] 간접노무비: 1주당 5~10만원, 재택·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: 시스템 구축비의 1/2 이내, 2,000만원 한도(기업당)
	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	· 육아휴직등 부여: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 · 대체인력지원: 출산전후(휴산사산)휴가,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 [해당 근로자 1인당] -대체인력인건비: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(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), 대규모기업 월 30만원 -육아휴직등 부여 간접노무비: 육아휴직 월30만원(대규모기업 제외),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월30만원(대규모기업 10만원)
고 유 지 원 금	고용유지 지원금	· 생산량 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·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 등을 지급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 * 지원사항 별도 문의
	무급 휴업·휴직 고용유지지원금	·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·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무급휴업·휴직필요성, 근로자 복귀 가능성, 직업능력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 * 지원사항 별도 문의
장 년 · 고 령 자 고 용 지 원 금	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	·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 기준율(1~23%)을 초과하여 고용 [지원수준] 기준고용률 초과 인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근로자수의 20%까지. 다만,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근로자는 지원기준을 산정 시 제외
	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	·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·중견기업 중 정년 도달 근로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해 정년연장, 정년폐지, 재고용하는 사업주 [지원수준]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30만원(분기별 신청), 최대 2년간 지원